

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307

제출년월일 : 1994. 11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 또는 삭제하므로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- 내무부 및 경기도에서 시달린 시·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거 안산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물품매입등의 요구시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 생략조항 삭제
(안 제8조)
-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대상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(안 제17조 제4항)
- 물품출납원의 장부증 소모품 대장을 삭제(안 제24조 제1항)

- 비품구분기준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조정(안 제5조 별표1)

□ 참고 사항

○ 관계법령

-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(장부등)
-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(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)
-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(불용품의 매각방법)

○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○ 기타참고사항 : 경기회계 13330 - 2780('94. 9. 28)호로 시·군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 시달

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 17조 제 4항 단서 중 "500만 원"을 "1천만 원"으로 한다.

제 24조 제 1항 중 제 4호를 삭제하고 제 5호를 제 4호로 한다.

【별표 1】의 품종구분기준란 중 (1)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물품매입등의 요구) 물품을 매입·수리</p> <p>· 제조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·수리·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·수리·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하니한다.</p>	<p>제8조(물품매입등의 요구) 물품을 매입·수리</p> <p>· 제조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·수리·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</p>
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불용품을 처분하는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증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"감정기관"이라 한다)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⑧ (생 략)</p> <p>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 1천만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

현 행	개 정 안
1 ~ 3 (생 략)	1 ~ 3 (현행과 같음)
<u>4. 소모품대장</u>	<u>〈 삭 제 〉</u>
<u>5. (생 략)</u>	<u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u>
<p>【별표1】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품의 종류(생 략) ○ 품종구분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비 품 - ①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의 물품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<p>(1) 소모품(생 략)</p>	<p>【별표1】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품의 종류(현행과 같음) ○ 품종구분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비 품 - ①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10만 원 ----- ----- ③ ----- ----- <p>(1) 소모품(현행과 같음)</p>

안산시 통합공과금 과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(안)

안산시